

## 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백신(화이자 BA.4-5 기반 2가 백신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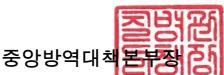
## 1. 관련

- 가. 중앙방역대책본부-7418('23.6.9)호
- 나.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
- 2. 위 호의 문서 및 근거에 따라, 백신 수령시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소분/포장박스에 부착된 유효기간 기준으로 백신을 사용할 것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.
- 3. 다만 기존 보유물량과의 사용, 관리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.
  - 가. 주의사항 : 배송 전 초저온 냉동 보관 조건에서 유통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12일부터 지자체, 접종기관으로 배송되는 물량부터 연장변경된 유효기간 내 10주 보관기간(2℃~8℃)
  - 나.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('23.6.2. 식약처)
    - 유효기간 연장(배송전 초저온(-90℃~-60℃)보관조건) : 제조일로부터 12개월→18개월

구 분	제조번호	당초 유효기간	변경 유효기간
코미나티2주 0.1mg/mL (토지나메란, 팜토지 나메란)	GJ2558	2023-07-31	2024–1–31
	GJ2637		
	GJ9231		
	GK1334		
	GJ2640		

\*변경된 유효기간 내에서 배송(해동)시 10주 보관기간(2℃~8℃) 준수

끝.



수신자 법무부장관(의료과장), 행정안전부장관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), 서울특별시장(안전총괄과장), 부산광역시장(감염병관리과), 대전광역시장(감염병관리과장), 대군광역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 인천광역시장(감염병관리과장), 광주광역시장(감염병관리과장), 생종특별자치시장(보건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질병정책과장), 강원특별자치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충청북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충청남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전라남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경상북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경상남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위생과장), 대한의사협회,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 개원의협의회

백신수급유통 전결 2023.6.14.

행정사무관 **조은영** 팀장 **박준구** 

협조자

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-7564 (2023. 6. 14.) 접수

우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, 국립인체자 / http://www.kdca.go.kr 원은행 2층

전화번호 043-719-6825 팩스번호 043-719-7188 / younga956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